

무배당 퇴직보험

하나생명보험(주)

## 확 인 서

무배당 퇴직보험을 변경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1년 5월 일

하나생명보험(주)  
선 임 계 리 사 서 종 무 (인)

무배당 퇴직보험  
사업방법서

하나생명보험(주)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퇴직보험

##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로부터 퇴직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

## 3. 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①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34 조(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 ②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이 보험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함)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함.

## 4. 보험종목의 세목 : 금리연동형

회사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해당월 동안 확정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부리함.

## 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함

② ①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회사는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함.

$$\text{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k_1 + \text{지표금리} \times k_2) / (k_1 + k_2)$$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	가중치		공시이율최저한도 (공시기준이율 기준)
	k <sub>1</sub>	k <sub>2</sub>	
① 6개월 연속 2% 이상인 경우	3	1	95%
② ①이외로 6개월 연속 1% 이상인 경우	2.5	1	92.5%
③ ①, ② 이외의 경우	2	1	90%

-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2/6) \times 100\}}{\{\text{산출시점 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2/6) \times 100\}}{\{\text{산출시점 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주) 운용자산수익률과 투자지출률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함

- 지표금리 수익률(%) =  $(A1 + A2 + A3) / 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li> <li>· A2 :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li> <li>·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li> </ul> |
|---|

·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1) \times 3 + Mi(-2) \times 2 + Mi(-3)}{6}$$

Mi(-3)은 산출시점 직전 3개월, Mi(-2)은 산출시점 직전 2개월, Mi(-1)은 산출시점 직전 1개월 이율

-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2.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함.  
 ※ 다만,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경우 '11. 5. 2 공시 시작으로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이 없어 공시 후 3개월까지는 통화안정증권 364일물과 병행 사용하여 지표금리를 산출한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 평균수익률, 국고채 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 (2)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함

- (3) (1)에도 불구하고 최초 판매월후(펀드개설월후) 7차월까지는 아래와 같이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함.

다만, 공시이율최저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90%를 적용함.

- (주)  $k(\leq 7)$ : 판매(펀드개설월)후 공시이율 적용 차월수,  $j = \max(k-2, 0)$

○ 공시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j + \text{지표금리} \times 3) / (j+3)$

다만, 최초판매월(펀드개설월)까지의 공시기준이율은 지표금리만 사용함.

- 운용자산이익률

(1)과 같이 산출하되, 운용자산수익률과 투자지출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 j \text{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2/j) \times 100\}}{\div}$$

- 투자지출률(%) =  $\frac{\{ \text{펀드개설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 j \text{ 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 j \text{ 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2 \times \text{직전 } j \text{ 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2/j) \times 100 \}} \div \{ \text{펀드개설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 j \text{ 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 j \text{ 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 주) 운용자산수익률과 투자지출률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함.(다만, k=1 또는 2인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은 "0" 적용)
- 지표금리 : (1)과 같이 산출함.

③ 회사는 년 2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함

④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함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 6. 보험료

### ①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 ②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 납입하는 보험료

### ③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급부와의 차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함)

## 7. 재정방식

장래 약속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원조달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본이되며, 무배당 퇴직보험에서는 여러 재정방식중 특정나이방식을 적용함.

- 특정나이 결정방법

- 단체의 직전 3년내 신규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단체의 직전 3년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빈(最頻)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단체의 직전 3년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저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관련자료의 부실, 부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8.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①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또는 이전일) 까지

### ② 납입기간

전기납

### ③ 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④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수금 등

⑤ 보험료의 반환

회사가 승낙거절 또는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함. (다만, 이전(移轉)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이전전(移轉前) 회사에 다시 반환함)

## 9. 재정결산 및 재계산

① 재정결산

회사는 매년 재정결산일(계약단체의 보험년도말일 또는 사업년도말일)에 계약단체에 연금재정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재정결산 실시

② 재계산

- 정기 재계산 : 매 5년마다 계약해당일(또는 무배당 퇴직보험 계약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함)에 정한 날) 기준으로 실시, 예정기초율 변경가능  
(다만, 예정사망률, 표준퇴직률 및 표준승급률 변경시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재계산시 변경된 예정기초율을 적용함)

- 임시 재계산 : 퇴직금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10. 급부의 종류

해당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급부

## 11. 퇴직급부 산정의 방식 및 기준

퇴직급부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은 해당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2. 급부지급의 기준

적립비율("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함)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함.

## 13. 급부지급의 방법

① 연 금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총실화보험료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거치기간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음.
- (3) 연금의 지급형태는 개인형 또는 부부형으로 하고, 각각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등으로 설계할 수 있음.
- (4) 연금의 지급기간은 종신 또는 유기로 하고, 반드시 보증지급기간 (5년이상 20년이내) 을 설정함.

- (5) 연금의 지급방법은 연단위연금, 6개월단위연금, 3개월단위연금 또는 월단위연금으로 함.
- (6)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급부 수급권 취득시 연금의 지급형태,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금 재원을 인수하여 지급을 보장토록 함.
- (7) 계약단체의 퇴직급부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급부가 연금인 경우에는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이 계약의 보험료계산이율로 산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인수하는 연금재원으로 함.
- (8) 연금적용이율은 퇴직연금의 재원을 각 연금 지급시점의 연금 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이 계약의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함.
- (9)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연금지급 개시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10)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연금지급 개시후 잔여보종 지급기간의 연금을 일시금(잔여보종 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② 일시금

### 14. 목표적립비율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퇴직급여제도를 퇴직보험제도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1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은 무배당 퇴직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함) 및 협정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조사한 후 청약에 대한 승낙여부 결정.

###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 가입

- ① 추가가입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해당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로 함.
-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추가가입시점 적용 적립비율 해당액을 납입토록 함.
- ③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함.
- ④ 추가가입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보험대상자)명부를 추가 교부하거나 정정함.

### 17. 해지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다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 기관으로 이전 처리함.



## 18. 협정서, 청약서 등의 서식

- ① 협정서의 서식은 별첨 제 1 호의 서식으로 함.
- ②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 2 호의 서식으로 함.
-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 3 호의 서식으로 함.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통지의 서식은 별첨 제 4 호의 서식으로 함.

## 19.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20.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실시하지 아니함.

## 21.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22. 통지가 필요한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부터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협정서에 정함.
- ② 회사는 계약체결 전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함.
- ③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함.

## 23. 근속년수 및 가입년수의 계산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함.

##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금리연동형) 으로 운용됨.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함.
- ③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함.

2.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함.

- (1) 급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의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25. 계약이전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협정서에서 정한 계약이전수수료는 당해 보험세목의 수익으로 편입함.

## 26. 기 타

- ①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실시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재계산시에 근속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나,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재계산을 통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함.
- ② 임원계약  
임원의 퇴직급부액 결정방법 등이 그 단체의 종업원과 상이하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음.
- ③ 공동인수계약의 취급  
이 보험의 계약은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취급기관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음.
- ④ 기존 계약단체 적용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⑤ 상품판매 범위에 관한 사항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이미 가입한 계약단체의 보험료 신규발생금액\* 및 추가 사외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함.  
\* 기존 직원의 보험료로서 직전 사외예치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 및 신규 입사자의 보험료

<별첨 1>

무배당 퇴직보험  
계 약 협 정 서

무배당 퇴직보험

## 계 약 협 정 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 (이하“병” 이라 합니다)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합니다) 와 갑의 퇴직금관련규정에 기초하여 무배당 퇴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사항을 협정합니다.

이 협정의 증명을 위해 본 협정서 3 부를 작성하고, 갑, 을 및 병이 서명 날인한 후 갑, 을 및 병이 각 1 부를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 소 : )

보 험 자 ○ ○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 소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대표자 ○ ○ ○ ○ 주식회사  
인  
(주민등록번호 : )

## I. 계약에 관한 사항

### 1. 보험종목 및 세목

이 계약의 보험종목 및 세목은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으로 한다.

### 2. 적용이율(준비금적립이율)

매월 회사(을)가 정한 공시이율로 한다.

회사(을)는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 최저한도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한다.

※ 지표금리 :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 개월 이율을 가중 이동평균하여 산출

다만,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 거쳐 적용 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함.

### 3. 목표적립비율

이 계약의 목표적립비율은 ( )%로 한다.

### 4. 특별계정에 의한 취급

이 계약은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 계정에 따라 관리·운용된다.

## II.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사항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자격은 ① 하며, 신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자격 취득자 또는 계약자의 사망처리 오류 등에 의한 미가입자를 추가 가입시키는 경우 추가가입시점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註) ① : 근속 년 이상 , 입사와 동시에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준급여(퇴직급여추계액)변경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준급여(퇴직급여추계액) 변경일은 매년 월 일, ..., 기업결산일로 한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의 동의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및 협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계약자는 무배당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해지 또는 이전시 (다만, 약관 제 16 조에 따른 계약 승계로 인한 이전 제외)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피보험자(보험대상자)중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 III. 보험료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① 납으로 (하며, 제 2 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註) ① : 월, 2 개월, 3 개월, 6 개월, 연

#### 2. 보험료율(액)의 조정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율(액)은 계약체결이후 정기재계산(①)을 통해 조정하며,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임시 재계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註) ① : 매 5 년마다 계약해당일, 매 5 년마다 월 일

### IV. 예정사업비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비례 예정사업비

납입순보험료(기본순보험료, 재정안정화순보험료)에 대하여 0.5%를 매 보험료 납입시마다 부가함 (다만, 연금충실화보험료에는 미부가), 다만, 다른 퇴직보험(또는 퇴직신탁) 계약의 준비금을 이전(다른 취급기관으로부터의 이전)받는 경우 보험료비례 예정사업비는 0.2%를 부가한다.

#### 2. 준비금비례 예정사업비

경과책임준비금에 대하여 규모별로 0.3%~0.55%를 매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며, 책임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납입한다.

책임준비금	30 억이하 부분	30 억초과~ 50 억이하 부분	50 억초과~ 100 억이하 부분	100 억초과~ 500 억이하 부분	500 억초과~ 1000 억이하 부분	1000 억초과 부분
사업비율	0.55%	0.50%	0.45%	0.40%	0.35%	0.30%

#### 3. 거치연금전환제특칙의 예정사업비

가. 연금지급 개시전 : 준비금비례 0.6% 부가 (보험료비례 未부가)

나. 연금지급 개시후 : 매회 연금액의 0.4% 부가

#### 4. 예정사업비의 할인

기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준비금이 전환, 회사내 다른 퇴직보험으로부터의 이전 및 약관 제 16 조(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한 계약단체간 준비금 이전시에는 보험료비례 예정사업비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계약이전시의 계약이전수수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에 다른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준비금(준비금비례 예정사업비 차감후)에 대해 0.4%의 이전수수료를 부과하며, 동 수수료는 해당 보험세목에 편입한다

### V. 급부에 관한 사항

#### 1. 급부방식, 급부액 결정방법 정년나이 등

이 계약의 급부방식, 급부액 결정방법, 정년나이 등은 값이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급부의 청구방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이 계약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3. 급부액 산정기준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최종 등록된 퇴직급여추계액에 계약단체의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급부금을 지급한다.

$$\text{적립비율} = \frac{\text{보험료납입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 책임준비금}}{\text{모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최종 등록된 퇴직급여추계액 합계액}}$$

#### 4. 연금급부의 지급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급부수급권 취득시 연금의 지급형태,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연금은 유효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 VI.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통지사항

#### 가. 보험료 산출 및 급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한 사항

1. 추가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기준급여, 직종, 사업장, 직급 등)
2. 승급후의 기준급여, 승급년월일(정기승급, 임시승급)
3. 급여체계의 변경, 기준급여의 변경 및 그 실시년월일

4. 정년/중도/사망퇴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년월일 등)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휴직, 복직 등 근속년수와 관계되는 사항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기준급여 등의 통지 오류의 정정
7. 퇴직률/승급률의 산출에 관한 사항
8. 퇴직급여추계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 나. 급부수급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

1. 정년/중도/사망퇴직자에 대한 통지
2. 급부지급이 제한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사유명세 등
3.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 다. 기타 사항

1. 협정서 내용변경의 경우 사전통지
2. 단체의 노동협약, 취업규칙 등 단체내부규정의 변경
3. 단체의 상호 및 주소의 변경
4. 단체의 대표자 및 인감의 변경
5. 단체의 합병, 조직변경 등 단체의 존속에 관계되는 사유의 발생
6.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 Ⅶ. 협의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갑, 을 및 병이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 (추가/삭제/수정) 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은 새로이 작성되는 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 무배당 퇴직보험 계약청약서

## 보험계약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보험계약내용

이 보험에 관한 계약내용은 귀사와의 협의에 의해 작성되는 무배당 퇴직보험계약 협정서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알릴사항용

	제 도 명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수	제 도 명	보험대상자 (피험자)수
가입인원	1.		3.	
총 명	2.		4.	

상기 보험계약의 가입대상인원은 퇴직금제도 관련법규와 당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 및 무배당 퇴직 보험계약협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무배당 퇴직보험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 認知하고 상기와 같이 무배당 퇴직보험계약의 청약을 신청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정보를 다른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 청약일자 년 월 일

보 험 계 약 자	단체명	거래인감	계 약 담 당 자
	주 소		
	대표자		



## 무배당 퇴직보험 가입증서 (보험증권)

증 권 번 호 \_\_\_\_\_

보험계약자  
단 체 명 \_\_\_\_\_

사 업 자  
등록번호 \_\_\_\_\_

보험계약일 \_\_\_\_\_

### 보험계약내용

이 보험의 계약내용은 보험계약자와 협의에 의해 작성된 무배당 퇴직보험계약 협정서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의 정함에 따릅니다.

1. 저희 회사는 무배당 퇴직보험약관과 해당 특약약관에 의하여 위에 기재한 보험 계약자와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합니다.

2.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년 월 일 본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수입인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9-10  
대 표 이 사 사 장 김 태 오

<별첨 4>

## 무배당 퇴직보험 적립내역안내

9999년 99월 99일 현재 귀하의 무배당 퇴직보험 적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사항	증권번호	99999999-99	가입 사항	가입번호	99999999-9
	단체명	○○○○○주식회사		가입자명	홍○○ (999999-9999999)
	계약상태	정상유지중		가입일자	9999년 99월 99일

적립내역	예상퇴직금	적립비율	적립금액	총납입보험료
	999,999,999 원	999.99%	999,999,999 원	999,999,999 원

본 안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에 의거 현재 귀하께서 근무중인 회사가 귀하의 퇴직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당사에 가입한 무배당 퇴직보험의 가입 사항과 적립내역을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9999년 99월 99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태 오

